공무원연금공단
대구·경북지역 복지시설 유치 지원계획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○ 공무원연금공단의 대구·경북지역 복지시설 건립 사업부지 선정 공모계획에 의거 응모코자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「지방자치법」제39조 제1항 8호 및 「지방재정법」제4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○ 인근I/C 또는 국도로부터 진입로 확보 지원
○ 추천부지까지 상·하수도 관로설치 지원
○ 하수종말처리장 유무또는 설치계획
○ 인·허가 업무협조 또는 대행가능 여부
○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

4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39조, 지방재정법 제44조

5. 검토의견
○ 제출자, 제안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공무원연금공단 대구·경북지역 복지시설 건립 사업부지 선정공모 계획에 의거 사업 부지를 추천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범위를 제시함에 있어 진입도로, 상·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, 인·허가 업무협조 또는 대행 여부, 지방세 감면 세제혜택 등을 지원코자 하며

○ 이는 공무원연금공단 대구·경북지역 복지시설을 유치를 위하여 우리군이 유치의지와 신뢰를 보임으로서 대상지 선정평가에서 유리한 평가여건을 확보하고자 함이며, 장래 우리군의 연차별 재정 부담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서

○ 앞으로 우리군의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 민자 유치 여건 조성과 시설입지에 따른 지역연계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